

##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신규 참여 전문대학 2차 모집 공고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또는 개별 중소기업과 전문대학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맞춤 기술인재 양성·공급을 지원하는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참여 전문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23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중소기업과 전문대학을 연계, 중소기업의 맞춤 기술인재 양성·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취업 촉진
  - \* 「중소기업-전문대학-학생」간 취업조건 3자 협약 체결(취업·채용, 현장실습 등)

### □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6개 전문대학
  - \* 지원대학 수는 신청현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대학당 2억원 내외 지원
  - \* 취업조건부 3자 협약을 통해 1팀-1프로젝트 수행 및 현장실습, 맞춤교육 등의 취업연계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선정된 연도를 포함하여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사업추진 성과결과에 따라 차년도 연장여부를 결정
  - \* 매년 사업추진 및 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대학은 선정 취소

## 2

## 신청대상 및 유형

###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한 산학협력 역량을 갖춘 전문대학\*

\* '전문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전문대학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

#### < 신청 제외 대상 전문대학 >

- ①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 ②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신청 가능하나 그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동 지원사업에는 참여 불가
- ③ 동 사업에서 지정이 취소된 대학은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사업신청 제한
- ④ 동 사업에 신규로 신청하여 탈락한 대학은 해당연도에는 사업신청 제한

### □ 신청유형

- 전문대학이 산학협력을 개별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로 구성하여 참여(중복신청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 < 산학협력 유형 및 주요기능 >

유형 기능	전문대학-업종별 협회·단체	전문대학-개별 중소기업
특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문대학과 업종별 협회·단체간 산학협력 체결</li><li>협회·단체는 회원사 인력 수요, 공동채용 등 관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문대학과 개별 중소기업간 산학협력 체결</li><li>중소기업별 맞춤 산학협력 체제 구축</li></ul>
공통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맞춤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취업연계지원 등 취업 조건부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li><li>전문대학은 맞춤인력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및 협회·단체(회원사)는 인력(학생)을 채용</li></ul>	

### 3

### 참여요건

\* 신청대학은 아래 사항의 참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전문대학 - 업종별 협회 · 단체(또는 개별 중소기업) - 학생” 간  
취업조건부 3자 협약체결

- 일하기 좋은 유품기업 등 산학협력에 적극적인 우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 · 단체와 협약체결
- 참여학생은 미취업자 학생이며, 차기년도 졸업예정자(2월, 8월)로 협약기업에 취업이 가능한 학생으로 최소 70명 이상 선발
  - \* 사업에 참여한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협약기업에 취업

※ 사업참여 제한 학생

- 병역법, 군인사법 등에 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미완료한 학생
- LINC(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 사업참여 이전에 협약기업 취업예정인 학생
- 협약기업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학생
- 기타,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협약기업에 취업 예정인 학생

- 3자 협약은 “예비 협약”(사업 신청시) → “본 협약”(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체결

< 산학협력 유형별 3자 협약 절차 >

산학협력 유형	주요 내용
전문대학-업종별 협회 ·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예비 협약) “전문대학 - 협회 · 단체”간 체결하되, 사업 참여 회원사(중소기업) 및 학생 규모를 명확히 명시</li><li>· (본 협약) “대학 - 협회 · 단체(개별 중소기업)-학생(개별)” 협약체결</li></ul>
대학 -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예비 협약) “전문대학 - 중소기업”간 체결하되, 사업 참여 학생 규모를 명확히 명시</li><li>· (본 협약) “전문대학 - 개별 중소기업 - 학생(개별)” 협약체결</li></ul>

## ②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 (맞춤교육) 협약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중심의 맞춤교육으로 전공수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100시간 내외 실시
  - \* 외부 교육기관 위탁 또는 산학협력 협회·단체(중소기업) 등에서도 교육 실시 가능
- (1팀-1프로젝트) 교수-학생-기업이 팀이 되어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료조사, 제품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등 공동 프로젝트 수행
  - \* 기업수요 반영 및 학생의 역량 발휘 제고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추진
- (현장실습) 현장체험, 맞춤교육 등 교육훈련 실시 후, 취업 희망자 대상으로 중소기업 현장 기술연수 실시 및 취업연계
- (기타) 산학협력 인력채용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 ex) 학생 자기계발 지원(외부 학원비 지원 등), 중소기업 이해연수(선배와의 만남, 전문가 초청 등), 채용 박람회, 타 사업과의 연계지원 등

## ③ 학생과 협약기업간 취업매칭 및 관리 등을 전담으로 하는 취업코디네이터 1명 이상 지정·운영

\* 취업코디네이터 일부 인건비를 정부보조금에서 지원(2천만원 한도)

※ 우대사항 : 산학협력 유형을 “전문대학-업종별 협회·단체”로 신청한 대학을 우대

## 4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대학당 2억원 내외

□ 지원내용

- 직접비 : 1팀-1프로젝트, 교육과정 개발·운영, 현장실습, 취업지원 등의 교육훈련 비용(지원예산의 95% 이내)
- 간접비 : 수용비 등 관리비용(지원예산의 10% 이내)

## 5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및 절차 >

단계	주요 내용	비고
서류 점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 증빙서류 등 검토	기점원
↓ 현장 평가 (20%)	○ 사업계획서 사실여부 확인, 산학 인프라 등 확인 * 지방중기청 담당자와 외부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점검 가능	지방 중기청
↓ 발표평가 (80%)	○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서 종합 평가 (사업계획 타당성 및 우수성, 사업추진 역량 등) *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점원
↓ 최종 선정 (운영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 최종 선정 확정(단, 60점 미만은 운영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중기청

### □ 서류점검, 현장평가 및 본평가를 통해 종합평가 실시

- **서류점검** : 사업계획서 충실성, 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
- **현장평가(20%)** : 교육환경 및 사업계획서 확인
  - \* 평가요소 : 지정요건 확인, 산학협력 인프라 역량 등
- **발표평가(80%)** : 평가위원회에서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대상 대학 선별
  - \* 평가요소 :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계획, 산학협력프로그램, 사업관리 등

### □ 최종 선정(운영위원회)

- **현장 · 발표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최하점수를 제외한 **최고평점**을 획득한 순으로 선정(단, 60점 미만은 운영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 \* 신청현황, 지역 여건, 지역 · 권역별 안배,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6

## 신청서 제출

□ 신청 · 접수기간 : 2014. 4. 23(수) ~ 5. 23(금)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

### <필수 제출 서류>

번호	제출서류	서식명	비고
1	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통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공통
3	운영협약서(중소기업용)	별지 제4호 서식	개별 중소기업 유형으로 신청 시
4	운영협약서(협·단체용)	별지 제5호 서식	업종별 협회 · 단체 유형으로 신청시
5	협회 · 단체 참여 회원사 명단	별지 제5호 서식 별첨1	
6	참여 희망 신청서(학생용)	별지 제6호 서식	공통
7	취업코디네이터 이력서	자유양식	공통, 경력 내용 포함

\* 사업계획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http://www.smb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공고) 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 시스템(sanhakin.smba.go.kr 공지사항) 참조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 □ 접수처 및 제출방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에 신청서 등 제출,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대덕테크비즈센터 4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인재양성부
  - \* 이메일 : [sanhak@tipa.or.kr](mailto:sanhak@tipa.or.kr), 전화번호 : 042-388-0344

**7**

## 사업설명회 개최

일 시 : 2014년 4월 30일(수) 14:00

장 소 : 대덕테크비즈센터 4층 대회의실(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8**

## 추진일정

주요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 고
신청 · 접수	'14. 4.23(수) ~ 5.23(금)	기점원
사업설명회	'14. 4.30(수)	대덕테크비즈센터 4층 대회의실
평가 및 선정	'14. 5.26(월) ~ 6.13(금)	중기청, 기점원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14. 6월	기점원
사업수행	'14. 6월 ~ 12월	전문대학
진도관리 및 사업완료	'14. 6월 ~ 12월	지방중기청, 기점원
최종평가	'15. 1월	중기청(기점원)

\* 삼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 문의처 [첨부 참조]

별첨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신청서식 1부.

< 첨 부 >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연락처	비 고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042-481-4365	
지방 중소기업청	서울청	기업환경개선과	02-2110-6345
	부산울산청	공공판로지원과	051-601-5121
	울산사무소	창업성장지원팀	052-283-0343
	대구경북청	공공판로지원과	053-659-2239
	광주전남청	공공판로지원과	062-360-9145
	경기청	공공판로지원과	031-201-6831
	경기북부사무소	창업성장지원팀	031-820-9013
	인천청	창업성장지원과	032-450-1119
	대전충남청	기업환경개선과	042-865-6132
	충남사무소	창업성장지원팀	041-564-3859
	강원청	창업성장지원과	033-260-1628
	충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43-230-5309
	전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63-210-6434
	경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55-268-252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인재 양성부	042-388-0344	<a href="http://www.smiba.go.kr">www.smiba.go.kr</a> (중소기업청)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공고